

근로자 보건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조약 및 권고의 검토 (I)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염 용 태

지난해에 대한민국이 국제연합에 가입하여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월 9일 국제노동기구에 가입원을 제출하여 헌장 제 1조 3항에 정해진대로 이의없이 회원국이 되었다. 이제 문제는 172개의 조약 중 어느 것부터 비준할 것인가의 단계만 남아있다. 현 상황에서 급히 해야 할 것은 조약들과 기준이 담고 있는 내용의 검토는 물론이고 국내법과의 차이에 관한 비교분석이다. 이런 필요성을 감안하여 172개의 조약과 178개의 권고, 그리고 다수의 결의안중 근로자 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나라 근로자 보건에 관련된 제반 법규와 연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I 국제노동기구 및 조약개요

1.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이하 ILO)는 국제노동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시행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가진 기구로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중 하나이다. 설립당시인 1919년에는 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산하기관이었다.

어느나라건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으

로 제반 산업의 발달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희생하는 사회적 덤핑을 자행하는 것이 상례이다. ILO는 이러한 사회적 덤핑의 역제가 각국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세계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덤핑을 막는 방법으로 모든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노동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시행을 감시, 감독하는 것이 ILO의 창설 목적이다. 이런 목적 아래 노사정 3자주의라는 ILO의 독특한 합의노출방식이 성립되었다.

즉 제 1차대전이 종료함에 따라 평화조약 8조에 국제노동법제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근거로 1917년 동위원회는 콤포트, 조지번즈 등의 주도아래 국제노동기구 설립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1919년 6월 28일 정식 발족되어 1차회의를 워싱턴에서 갖고 공업사회에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제1호 조약을 위시하여 제6호 조약까지 체결하였다.

그후 1934년에 국제노동기구헌장을 제정하여 ILO의 성격, 역할, 활동을 규정하였으며 현재 172개의 조약(convention)과 178개의 권고(recommendation)를 결의하였다.

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은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권고안은 비준을 요하지 않으나 내용

에 관한 실행여부의 보고는 해야하는 것이다.

2. 현장

ILO가 창설된지 55년이 지난 1974년 11월1일부터 발효하게 된 현장의 전문을 보면 ILO의 임원이나 목적이 명료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현장의 전문과 보건에 관련된 부분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전문

세계의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를 기초로 함으로써 확립할 수 있으므로, 또한 세계의 평화와 협조를 위대롭게 할만한 중대한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부정, 고난 및 궁핍을 다수의 국민에게 가져다주는 노동조건이 존재하며 또한 이러한 노동조건을, 예컨대 1일 및 1주의 최장노동시간의 설정을 포함하는 노동시간의 규제, 노동력공급의 조정, 실업의 방지, 부당한 생활임금의 지급,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질병·부상에 대한 노동자의 보호, 아동·연소자 부인의 보호, 노령 및 폐질에 대한 급부, 자국이외의 국가에서 고용될 때의 노동자의 권익보호,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보수원칙의 승인, 결사의 자유원칙 승인, 직업 및 기술 교육의 조직을 통한 조치에 의하여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또한 어떠한 국가가 인도적인 노동조건을 채택하지 아니함은 자국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타국에 장애가 되므로, 계약국은 정의 및 인도적 감정과 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코자하는 임원을 촉진하며, 또한 이 전문에 포함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국제노동기구헌장에 동의한다.

(2) 현장에 내포된 보건부분

ILO가 주장하는 급선무는 노동조건의 개선이다. 현장 전문에 이미 기술된 바 노동시간, 실업방지, 임금을 우선의 문제로 제기하고 그 다음이 고용에서 생기는 질병, 부상, 아동 및 연소자와 부인의 보호, 노령문제, 폐질에 관한 급부등이다. 이는 결사의 자유나 기술교육문제 보다

앞선 것 이었다.

현장의 요소는 크게 제1장 조직, 제2장 절차, 제3장 일반규정, 제4장 잡칙으로 구성되면 ILO 목적에 관한 부속서를 첨부하였다. 이 부속서에는 ILO의 의무를 확인하면서 보건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명기 하였다.

- (a) 광범한 의료금부의 확장
- (b)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의 충분한 보호
- (c) 아동의 복지 및 모성의 보호
- (d) 충분한 영양, 주거 및 레크레이션과 문화시설의 제공
- (e) 교육 및 직업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

3. 요약

전체 172개 조약중 산업보건관련 조약이 94개이다. 이중 근로시간 및 휴식·휴가 최저연령에 관한 조약이 38개이다. 여기서 휴식 등에 관한 38개 조약을 제외한 산업보건관련조약 56개의 명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 산전 산후에 있는 부인의 고용에 관한 조약 (제3호)
- * 야간에 있어서 부인의 고용에 관한 조약 (제4호)
- * 공업에 고용되는 연소자의 야업에 관한 조약 (제6호)
- * 농업에 있어서 근로자보상에 관한 조약 (제12호)
- * '페인트'칠에 있어서 백연의 사용에 관한 조약 (제13호)
- * 해상에 고용되는 아동 및 청소년의 강제신체검사에 관한 조약 (제16호)
- * 근로자 재해보상에 관한 조약 (제17호)
- * 근로자 직업병 보상에 관한 조약 (제18호)
- * 근로자 재해보상에 대하여 내외인 근로자의 균등처우에 관한 조약 (제19호)
- * '빵' 제조소에 있어서 야간작업에 관한 조약 (제20호)
- * 공업 및 상업에 있어서 근로자와 가정고용인을 위한 질병보험에 관한 조약 (제24호)

- * 농업근로자를 위한 질병보험에 관한 조약 (제25호)
- * 선박의 적하 또는 하역에 고용되는 근로자의 재해보호에 관한 조약 (제28호)
- * 선박의 적하 또는 하역에 고용되는 근로자의 재해보호에 관한 조약 (제32호) (1932년 개정)
- * 공업 또는 상업에 고용되는 자, 자유직업의 고용되는 자와 가내근로자 및 가정고용인을 위한 강제폐질보험에 관한 조약 (제37호)
- * 농업에 고용되는 자를 위한 강제폐질보험에 관한 조약 (제38호)
- * 공업 또는 상업에 고용되는 자, 자유직업에 고용되는 자와 가내근로자 및 가정고용인을 위한 독신 부인 및 고아보험에 관한 조약 (제39호)
- * 농업에 고용되는 자를 위한 독신부인 및 고아보험에 관한 조약 (제40호)
- * 야간에 있어서 부인의 고용에 관한 조약 (제41호) (1934년 개정)
- * 근로자 직업병보상에 관한 조약 (제42호) (1934년 개정)
- * 광산의 갱내작업에 있어서 여자의 고용에 관한 조약 (제45호)
- * 폐질, 노령과 독신부인 및 고아보험에 의거한 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제도의 확립에 관한 조약 (제48호)
- * 해양원의 질병, 상해 또는 사망의 경우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조약 (제55호)
- * 해원을 위한 질병보험에 관한 조약 (제56호)
- * 선박 승무원에 대한 식량 및 조리에 관한 조약 (제68호)
- * 선원의 건강검사에 관한 조약 (제73호)
- * 공업에 있어서 아동 및 연소자의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검사에 관한 조약 (제77호)
- * 비공업적업무에 있어서 아동 및 청소년의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검사에 관한 조약 (제78호)
- * 비공업적업무에 있어서 아동 및 연소자의 야간작업의 제한에 관한 조약 (제79호)
- * 공업 및 상업에 있어서 근로감독에 관한 조약 (제81호)
- * 공업에 고용되는 부인의 야간작업에 관한 조약 (제89호) (1948년 개정)
- * 공업에 고용되는 청소년의 야간작업에 관한 조약 (제90호) (1948년 개정)
- * 모성보호에 관한 조약 (제103호) (1952년 개정)
- * 어선원의 건강검사에 관한 조약 (제113호)
- * 어선원의 고용계약에 관한 조약 (제114호)
- * 전리방사선으로부터 근로자의 방호에 관한 조약 (제115호)
- * 기계의 방호에 관한 조약 (제119호)
- * 상업 및 사무소에 있어서 위생에 관한 조약 (제120호)
- * 사무소 상해의 경우에 있어서 급부에 관한 조약 (제121호)
- * 광산의 갱내에 있어서 연소자의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검사에 관한 조약 (제124호)
- * 근로자 1인이 운송할 수 있는 최고중량에 관한 조약 (제127호)
- * 폐질, 고령 및 유족 급부에 관한 조약 (제128호)
- * 농업에 있어서 근로감독에 관한 조약 (제129호)
- * 의료 및 상병급부에 관한 조약 (제130호)
- * 선원에 대한 업무재해방지에 관한 조약 (제134호)
- * 벤젠의 유독위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조약 (제134호)
- * 발암성물질 및 약품에 기인되는 작업상 위해예방 및 통제에 관한 조약 (제139호)
- * 공해, 소음 및 진동에 기인하는 작업환경에 있어서 직업상 위험에 대한 근로자보호에 관한 조약 (제148호)
- * 간호인의 고용, 근로조건 및 생활에 관한 조약 (제149호)

- * 부두작업에 있어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약 (제152호)
- * 산업안전 및 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조약 (제155호)
- * 산업 위생에 관한 조약 (제161호)
- * 건강보호 및 의료보험 (선원)에 관한 조약 (제164호)
- * 건설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약 (제167호)
- * 작업장에서의 화학약품사용안전에 관한 조약 (제170호)
- * 야간근로에 관한 조약 (제171호)

4. 조약에 관한 국가별 인준현황

전체조약 172개중 국내 노동관계법과 비교하여 가장 문제시 될 조약은 단결권 관련조약과 여자 및 연소자보호 관련조약, 고용정책 관련조약 등 대략 30여개 정도라고 한국노총연맹이 말하고 있으나 근로자 건강이나 질병관리에 관한 조약은 그 검토에서 제외된 것 같다. 선진국의 경우도 172개 조약 모두를 비준하지는 않고 자국의 국내법규에 무리가 없는 조약을 선택적으로

비준하고 있다. 아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도 9개 조약만 비준하고 프랑스가 113개 비준하여 가장 많은 조약을 비준하고 있다. 심지어 제168호 고용촉진 및 보호조약(1988)은 비준국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위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도 ILO가입후 급격한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른 혼란은 바람직 하지 않다. 따라서 국내 노사관계법들을 비교 검토하여 ILO조약의 수준에 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점진적으로 국내법을 개정한 뒤에 점차 보다 많은 조약을 비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국가의 조약 비준수			
미국	9개	싱가폴	21개
영국	80개	말레지아	11개
서독	69개	필리핀	21개
프랑스	113개	인도네시아	8개
일본	39개	태국	11개
스웨덴	78개		

